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으로 환원하는 한편,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배정에 따라 2017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지방산림청에 배정된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으로 전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2020.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도시숲경관과 및 산지정책과를”을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도시숲경관과·산지정책과 및 정원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3.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5.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5항 단서 중 “13명”을 “8명”으로, “12명, 공업서기 1명”을 “8명”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목재이용연구부장”을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317”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2”을 “308”로 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주사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6”을 “4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5”를 “24”로 한다.

별표 6 방송통신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를 삭제하며, 방송통신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4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3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3”을 “4”로 한다.

별표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0”을 “123”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8”을 “10”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25”를 “24”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725”를 “72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710”을 각각 “708”로 하며,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9”를 “1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3”을 “2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7”을 “53”으로 하고,

공업서기 “5”를 “4”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20”을 “123”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8”을 “10”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25”를 “24”로 하고, 통신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1년 1월 5일”을 “2023년 1월 5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8월 10일”을 “2022년 8월 1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원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8명은 각각 2022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제8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복지국에 <u>산림복지정책과 · 산림휴양등산과 · 산림교육치유과 · 도시숲경관과 및 산지정책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u>산림복지정책과 · 산림휴양등산과 · 산림교육치유과 · 도시숲경관과 · 산지정책과 및 정원팀을</u> ----- ----- <u>기술서기관으로</u>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삭제>
8. <u>국가정원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지방 · 민간정원의 육성 · 지원</u>	<삭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u>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②・③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 ④ (생략)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u>13명</u>(행정서기 또는 임업	2. <u>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u> 3. <u>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4. <u>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u> 5. <u>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6. <u>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u>8명</u>-----
---	--

서기 <u>12명</u>, 공업서기 <u>1명</u>)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 ⑨ (생 략)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4조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 란 국제산림협력관 및 국립산림 과학원 <u>목재이용연구부</u>장을 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임업통상팀은 <u>2021년 1</u> <u>월 5일</u>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u>8명</u>-----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 <u>산림생명자원연구부</u>장--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3년 1</u> <u>월 5일</u>-----.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일자리창업팀은 2020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u> ②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3명은 각각 2020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u>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u> ----- ----- ----- -- 2022년 8월 10일----- --.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17</u>	<u>313</u>	-4
·	·	·	
·	·	·	
일반직 계	<u>312</u>	<u>308</u>	-4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u>2</u>	<u>1</u>	-1
·	·	·	
·	·	·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u> <u>방재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 보	<u>46</u>	<u>45</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5</u>	<u>24</u>	-1
•	•	•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방송통신서기보	• • <u>9</u>	• • <u>10</u>	+1
• • 통신운영서기보	• • <u>4</u>	• • <u>3</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u>2</u>	<u>3</u>	+1
·	·	·	
·	·	·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u> <u>방재안전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9</u>	<u>10</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2</u>		<u>33</u>	+1	
일반직 계			<u>32</u>		<u>33</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3</u>		<u>4</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 보	<u>120</u>	<u>123</u>	+3
·	·	·	
방송통신서기보	<u>8</u>	<u>10</u>	+2
운전서기보	<u>25</u>	<u>24</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3</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7</u>	-2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25	723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710	708	-2
일반직 계	710	708	-2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9	11	+2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 보	23	24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7	53	-4
공업서기	5	4	-1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 보	<u>120</u>	<u>123</u>	+3
•	•	•	
방송통신서기보	<u>8</u>	<u>10</u>	+2
운전서기보	<u>25</u>	<u>24</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3</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7</u>	-2
•	•	•	
•	•	•	